



안전한 경기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는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가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카카오톡 친구 추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00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5층



“우리 아이의 안전한 교육환경,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가 함께합니다.”

보상 · 지원종류

요양급여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부상의 치료비 지급
장해급여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치료(요양) 종료 후에도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
간병급여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치료(요양)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수시로 간병
유족급여, 장의비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위로금	교육활동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때 지급
보전비용	교직원과 교직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보전
학교폭력지원	학교폭력 사향 발생 시, 가·피해자 간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치료비 지원 후 가해자에게 구상 진행
심리상담지원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심리적 상담이 필요할 때 심리상담비용 지원

구비서류

필수 서 류	공제급여청구서	· 청구인(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서명(날인) · 청구인: 보호자 · 공제가입자: 학교장 · 피공제자: 사고학생 · 청구액: 소요된 치료비
	진료비(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원본	· 카드전표, 사본, 세부내역서, 간이영수증은 처리 불가
	청구인 통장사본	· 공제급여 결정액 입금 시 계좌 확인용
선택 서 류	진료비 세부내역서	· 비급여 진료비가 있는 경우 제출 · 비급여 진료비 중 인정대상 항목 확인용
	주민등록등본	· 청구인과 학생(피공제자) 간 관계 확인용 · 청구액 5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제출
	진단서	· 영수증 원본 첨부 시 진단서 발급비용 지급 · 청구액 5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제출

Q&A로 알아보는 알쏭달쏭 보상제도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가 궁금하세요?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로 문의하세요.



1. 요양급여(치료비)의 보상의 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이 부담한 금액으로 하며,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비급여’ 진료비)에 대해서는 「학교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부 보상합니다.

2. 심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공제회에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조사의 필요성이나 의료 자문을 실시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14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자녀가 실손보험에 있어 보장을 받았는데 공제회에 청구가 가능한가요?

보험은 개인과 보험사의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공제회의 보상은 학교안전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4. 청구권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3년간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5. 공제급여 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제급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공제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